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보관)중 “읍.면”을 “군청”으로 하고, “읍.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4조(보관관리 및 책임)중 “읍.면장”을 “군수”로 하고, “총무업무담당주사”를 “건설과장이”로 한다.

제5조(사용신청)①항중 “[별지서식]”을 “[별지제1호서식]”으로하고, “읍.면장”을 “군수”로 한다.

②항중 “읍.면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에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관리책임자는 사용승인된 양수기에 대하여양수장비대여대장 [별지 제2호서식]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한다.

제7조(사용기간)①항중 “읍.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11조(사용료)①항중 “읍.면장은”을 삭제 한다.

제12조(반환 및 변상)①항중 “읍.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양 수 장 비 대 여 대 장

일련 번호	품 명	규 격	관리 번호	사용기간	사용료	사 용 자		회수일자	비 고 (전화)
						주 소	성 명		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	
제3조(보관).....	읍.면.....	읍.면	제3조(보관).....	군청.....	군수
장이			가		
제4조(보관관리 및 책임).....	읍.	읍.	제4조(보관관리 및 책임).....	군	군
면장	총무업무담당	당	수.....	건설과장이.....	
주사가					
제5조(사용신청)①.....			제5조(사용신청)①.....		
...[별지서식]을 읍.면장에게.....			...[별지제1호서식]을 군수에게.....		
②읍.면장은			②군수는		
<신설>			③관리책임자는 사용승인된 양수기에		
			대하여 양수장비대여대장[별지제2호서		
			식]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.		
제7조(사용기간)①.....	읍.면장	의	제7조(사용기간)①.....	군수가..	
이.....					
제11조(사용료)①.....			제11조(사용료)①.....		
읍.면장은			군수는		
제12조(반환 및 변상)①.....			제12조(반환 및 변상)①.....		
...읍.면장이군수가		